

“오산세교 한신더휴” 당첨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계약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류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0)이후 발행본에 한합니다.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2024. 05. 28(화) 조회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예약기간	2024.05.28(화) ~ 2024.06.08(토) / 10:00 ~ 16:00
	예약방법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서류접수일정	2024.05.30(목) ~ 2024.06.08(토) / 10:00 ~ 16:00(입장기준)
정당계약기간		2024.06.10(월) ~ 2024.06.14(금) 5일간 / 10:00 ~ 17:00

- ※ 건분주택에서는 당첨 동·호수를 유선상으로 안내하지 않으니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장 시 당첨자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유형에 따른 검수시간이 상이하여 다소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사전서류 미접수자는 정당계약 시 자격검증 절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나 추가서류 검증절차로 계약서 불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서류접수기간내 자격검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분양 완료 후 파기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안내
필수 서류	서약서 /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다자녀 배점 기준표	-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에 한함(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신청 시 인감도장 제출 생략)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신청 및 계약은 불가함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여권제외) 등
	주민등록표등본(전부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여부 확인 청약신청자가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의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급)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전부포함)	배우자	주민등록등분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시 (3세대 이상 구성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날인 원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배우자	임신의 경우(출산이행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위임장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대리인 위임용, 본인 발급용)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임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